

## 제 9 장 정부조달

### 제 9.1 조 일반규정

1.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4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(이하 “1994년도 정부조달협정”이라 한다)상의 자신의 권리 및 의무와 각 당사자의 정부조달 시장에서 양자 간 무역 기회를 더욱 확장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재확인한다.
2. 양 당사자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의 맥락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국제적 자유화를 증진하는 것에 대한 양 당사자의 공유된 관심을 인정한다. 양 당사자는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제24조제7항에 따른 검토에서, 그리고 그 밖의 적절한 국제포럼에서 계속 협력한다.
3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상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, 또는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는 협정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4.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달에 대해서, 양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합의된 개정 정부조달협정 협정문(이하 “개정 정부조달협정”이라 한다)<sup>1)</sup>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한다.
  - 가. 그 밖의 당사자의 상품, 서비스 및 공급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(개정 정부조달협정 제4조제1항나호 및 제2항)
  - 나.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(개정 정부조달협정 제5조)
  - 다. 참가조건(개정 정부조달협정 제8조제2항)은 다음으로 대체된다:  
“어느 한 쪽 당사자의 공급자가 조달에 참가하거나 계약에 낙찰

1) 2007년 11월 19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negs 268(Job No[1].8274)에 포함되었다.

받기 위해서는 그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조달기관에 의하여 하나 이상의 계약을 종전에 낙찰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나, 사전 작업 경험이 조달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인 때를 제외하고, 공급자가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전 작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”

- 라. 기구(개정 정부조달협정 제21조), 그리고
- 마. 최종 규정(개정 정부조달협정 제22조)

#### 5. 제4항에 따른 개정 정부조달협정 적용의 목적상,

- 가.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“협정”이란 “장”을 말한다. 다만, “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”란 “비당사자”를 말하며, “협정의 당사자”란 “당사자”를 말한다.
- 나.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“그 밖의 당사자”란 “다른 한 쪽 당사자”를 말한다. 그리고
- 다.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“위원회”란 “작업반”을 말한다.

### 제 9.2 조 적용범위

- 1.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은 그 개정 또는 대체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및 그에 따른 주석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달이다.
- 2. 이 협정의 목적상, 부속서 9에서 정의된 건설·운영·이전 방식 계약(이하 “건설·운영·이전 방식 계약”이라 한다)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은 부속서 9의 적용을 받는다.

### 제 9.3 조 정부조달 작업반

제15.3조(작업반)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정부조달 작업반은 상호 합의하는 대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다음을 위하여 회합한다.

- 가.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회부된 정부조달과 건설·운영·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문제의 검토
- 나. 각 당사자의 정부조달과 건설·운영·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의 기회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, 그리고
- 다. 이 장의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의 논의